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가산할 수 없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제공한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150%를 가산할 수 있다.(일요일 50%, 연장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40% 감경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60% 감경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